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인확인 및인감대조	담 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RM)

## 추가약정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매출채권보험 금리감면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20    년    월    일

채 무 자 \_\_\_\_\_ (인)  
주 소 \_\_\_\_\_

본인은 은행과 약정한 \_\_\_\_년 \_\_\_\_월 \_\_\_\_일자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이하 “원약정”이라 함)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 제1조(상환의무 등)

1. 대출금의 상환의무는 “원약정” 조건에 따라 판매기업 본인에게 있으며,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채권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판매기업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매출채권보험금을 본인의 대출금 상환에 우선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 제2조(대출금리의 감면)

1. 본 약정서는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한 판매기업에게 취급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 대출금리의 감면은 판매기업 본인이 가입한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만기일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대출금리감면사유	유효한 매출채권보험의 가입	금리감면대상 여신(한도)금액	금           원
대출감면대상기간		구매기업명	
대출금리감면내용	금리감면 전		금리감면 후

### 제3조(대출기간중의 금리 변경)

약정기간 동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2조의 금리감면전 대출금리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1. 판매기업 본인이 가입한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2. 판매기업 본인이 가입한 매출채권보험의 실효 또는 중도해약 등으로 매출채권보험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 제4조(기타)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확인을 위해 본인의 사업자 관련 정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공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이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추가약정서상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 인	(인)
--	-----	-----